

# 1. 세금계산서 수령분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수령분 매입세액’이란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를 수입할 때 거래 징수당한 매입세액 중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말함.

이러한 매입세액은 ‘구입시점(수입시점)’을 기준으로 공제하므로 사업에 이미 사용된 것은 물론 앞으로 사용될 재화·용역에 대한 매입세액도 그 구입한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②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서상의 매입세액란에는 매입세액 공제되는 것과 불공제 되는 것의 구분없이 수취한 모든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 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일반과세자인 공급자(매출자)가 실질적인 거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을 경우 공급받는자(매입자)로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 거래 사실 확인신청
-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 함.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따라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해당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 3. 기타공제 매입세액

#### 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분 매입세액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한 신용카드매출전표(기명식선불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다만, 목욕, 이발, 미용업과 여객운송업(전세버스를 제외한다) 및 미술관, 박물관 등의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받은 것은 제외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으려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확정신고를 한 때로부터 5년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증명자료로 보관하여야 한다.

## 2) 인제매입세액

### ① 인의

인제매입세액공제란 과세사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공급은 제외)이 과세되는 경우에 면세 매입가액의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면세재화를 원재료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공급가액이 과세될 경우 발생하는 환수효과와 누적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 ② 인제매입세액

$$\text{인제매입세액} = \text{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액} \times \frac{2}{102}$$

단, 음식점업 중 개인사업자는  $\frac{8}{108}$ , 법인사업자는  $\frac{6}{106}$ , 관세유표장소는  $\frac{4}{104}$

※ 간이과세자는 음식점업만 인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 3)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포함)와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재활용폐자원의 매입가액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과세표준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text{재활용폐자원 등 매입가액} \times \left( \frac{6}{106} \text{ (중고자동차는 } \frac{9}{109} \text{)} \right)$$

#### 4) 재고매입세액

재고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일반과세자 보다 부족하게 공제받은 부분을 추가로 공제하여 주는 제도로서, 변경 당시의 재고품과 건설중인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의 차액을 계산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후 재고매입세액의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계산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구분	계산식						
재고품	$\text{취득가액} \times \frac{10}{110} \times (1 - \text{업종별 부가가치율})$						
건설중인자산	$\text{건설중인자산 관련 공제대상 매입세액} \times (1 - \text{업종별 부가가치율})$						
감가상각자산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매입한 자산</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math display="block">\frac{10}{110}</math> </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math display="block">\times (1 - \text{감가율} \times \text{경과된 과세기간수}) \times (1 - \text{업종별 부가가치율})</math> </td> </tr> <tr>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건설·신축·제작한 자산</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math display="block">\text{공제대상 매입세액} \times (1 - \text{감가율} \times \text{경과된 과세기간 수}) \times (1 - \text{업종별 부가가치율})</math> </td> </tr> </table>	매입한 자산	$\frac{10}{110}$	$\times (1 - \text{감가율} \times \text{경과된 과세기간수}) \times (1 - \text{업종별 부가가치율})$	건설·신축·제작한 자산		$\text{공제대상 매입세액} \times (1 - \text{감가율} \times \text{경과된 과세기간 수}) \times (1 - \text{업종별 부가가치율})$
매입한 자산	$\frac{10}{110}$	$\times (1 - \text{감가율} \times \text{경과된 과세기간수}) \times (1 - \text{업종별 부가가치율})$					
건설·신축·제작한 자산		$\text{공제대상 매입세액} \times (1 - \text{감가율} \times \text{경과된 과세기간 수}) \times (1 - \text{업종별 부가가치율})$					

## 5) 변제대손세액과 대손처분받은 세액

제5장 제3절의 3.대손세액공제에서 이미 설명.

## 6) 관세사업에 사용된 면세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관세사업 전환)

면세사업용으로 구입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관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그 관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관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text{공제액} = \text{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관련 불공제 매입세액} \times (1 - \text{감가율}) \times \text{경과된 관세기간 수} \times \text{전용한 관세기간의 관세공급비율}$$

\*1 관세공급비율 = 관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단, 당해 관세기간의 관세공급가액 또는 면세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관세기간 매입가액비율-〉 예정공급가액 비율-〉 예정사용면적 비율 순으로 관세공급비율을 계산한 후, 관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관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에 정산한다)

\*2 관세공급비율 < 5% ⇨ 공제세액은 없는 것으로 봄.

## 4.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다음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 1)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으로서,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다.

### 2) 세금계산서 미수취 · 부실기재분 매입세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 **4)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공동경비 중 법정기준을 초과하여 법인이 지출한 금액 포함)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5) 비영업용 소형승용차(개별소비세 과세대상, 1,000CC초과 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6)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 **7)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

과세재화 또는 용역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거래징수를 당했더라도 면세 사업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면세사업자의 원가를 구성한다.

#### **8) 토지관련 매입세액**

## 5.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

### (1) 의의 및 요건

- 경영(과세사업과 면세사업)사업자의 공통사용재환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 공통사용재환의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불공제 부분)의 구분기준
  - 원칙 : 실지귀속에 따름
  - 안분계산 :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공통매입세액을 일정한 방법으로 안분계산

## (2) 안분계산의 원칙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안분계산기준 : 공급받은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기준
  - 예정신고기간에 매입한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의 면세공급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 = 공통사용재화의 매입세액 ×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공급비율

$$\text{면세공급비율} = \frac{\text{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text{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3) 동일한 과세기간 중에 매입하여 공급(매각)한 경우 매입세액의 안분

- 공통사용재화를 공급받은 과세기간 = 공급한 과세기간
- 안분계산기준 :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
- 매출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않고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도 전액 공제

매출세액의 안분	매입세액의 안분
공급시 매출세액을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한 경우	매입세액도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로 안분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경우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함

#### (4) 안분계산을 배제하고 전액 공제하는 경우

- ①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공급비율 < 5% (단, 공통매입세액 5백만원 이상 제외)
- ② 당해 과세기간 중 공통매입세액의 합계 < 5만원
- ③ 신규 사업개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공통사용재화를 공급(매각)한 경우

## (6) 매입 후 면세비율의 증감으로 인한 납부(환급)세액의 재계산

### • 재계산 대상 매입세액

- 관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 • 재계산 조건

- 공통사용재환의 매입세액에 대해 면세비율(면세공급비율 또는 면세사용면적비율)에 의해 안분계산(혹은 정산)하여 공제
- 이후 당초 면세비율이 변동(정산이 필요한 경우 정산 이후 변동)
- 매입 후 면세비율이 당초 면세비율 또는 직전재계산시의 면세비율보다 5% 이상 증가 혹은 감소한 경우

- 재계산 방법과 재계산액의 신고납부

- 감가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증감한 면세비율 상당액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가감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신고납부

- 재계산에 적용되는 감가율과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공급의제에서 인제시가 계산규정을 준용

- 재계산 공식

$$\text{가산(공제)세액} = \text{공통매입세액} \times (1 - \text{감가율} \times \text{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times \text{증감*한 면세비율}$$

\*) 5% 이상 증감한 경우에 한함.

- 재계산이 배제되는 경우

- ① 재환의 공급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 ② 당해 감가상각자산을 공급(매각)하는 과세기간